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3
------	-----

2011. 7. .
재정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월 31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8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】

-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(2011.6.29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 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)

가. 제안이유
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.
-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4조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가. 조례의 개요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‘노사민정협의회’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조례의 제정 배경

- 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’¹⁾등을 기초로 2010년 5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‘지역노사민정협의회’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이에 따라, 서울시는 2000년부터 설치·운영중인 ‘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’를 확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, 주민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한 ‘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’를 구성하기로 하였음.

다. ‘노사민정협의회’ 구성방법의 변경(안 제4조)

- 서울시는 이미 2000년부터 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」 제19조에 따라 지역내 노사정간의 협의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제정하고, 노동정책 및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’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‘노사정협의회’는 관할구역의 근로자와 사용자, 서울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·운영해 왔음.
- 그러나, 최근 3년간 ‘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’는 지난 2009년 4월 단 한차례 개최된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그 존재가 유명무실한 상태임.
- 이에 따라, 본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일부 기능을 조정한 ‘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’(이하 “협의회”)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해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.

1) 2009년 2월 23일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

- 그러나, 현재의 ‘노사정협의회’에도 전문성을 가진 공익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‘노사정협의회’의 기능과 활동이 미약했음을 감안할 때, 일부 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해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.

라. 협의회 의결방법의 변경(안 제6조)

-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기존의 ‘노사정협의회’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협의회 의결정족수를 과거보다 완화하였음.
- 또한, 기존 조례에서 의결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특정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결을 막기 위해 규정하고 있던,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 사안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.

〈표〉 협의회 의결방법의 비교

	노사정협의회	노사민정협의회
회의 개의 정족수	재적위원 과반수	재적위원 과반수
의결 정족수	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	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의결조건	근로자, 사용자, 서울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함.	없음.

마. 수당지급 대상의 제한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는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하지만,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(2010.12.24)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제외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의 직·간접성을 따질 이유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²⁾.

바.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「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」을 근거로 하는 ‘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’을 대신하는 ‘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’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에 적합하도록 협의회에 주민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기존에도 이미 공익대표라는 이름으로 주민 혹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.
- 아울러, 협의회 의결조건을 과거보다 훨씬 완화하고 있어 자칫 협의회 운영이 일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, 편향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이전의 노사정협의회에 비해 의결 정족수 규정이 완화되었고, 각 대표 위원의 필수 참석 규정도 삭제되어 일방의 의견에 따른 편향된 결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공무원 참석수당 금지 규정이 문맥상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금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.

2) 지방위원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나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, 근로자와 사용자,서울시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규정을 둠(안 제6조제3항).
-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.

Ⅶ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3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1년 7월 8일
제안자 : 재정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이전의 노사정협의회에 비해 의결 정족수 규정이 완화되었고, 각 대표 위원의 필수 참석 규정도 삭제되어 일방의 의견에 따른 편향된 결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공무원 참석수당 금지 규정이 문맥상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금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, 근로자와 사용자, 서울시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규정을 둠(안 제6조제3항).
-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함(안 제12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

안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6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수당 등) 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회의) ① ~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2조(수당 등) 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이하삭제>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근로자, 사용자, 주민 및 서울특별시(이하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 대표
2. 사용자 대표
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5.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

③ 위원 중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(노동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)중에서,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(사용자 단체의 서울특별시 대표자를 말한다)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 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노사분규 발생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, 노사분규 중이거나 노사분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한시적으로 수시위원에 위촉하여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협의회등”이라 한다)는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,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등은 필요할 경우,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추구)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성신행행 의무) ① 서울특별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등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등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노사업무 담당과장(담당관)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① 협의회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, 연구자료 수집,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특별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제4조 (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행한 결정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가 행한 결정으로 본다.

제5조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“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폐지한다.